

■ 소프트웨어 特許審査基準

—日本特許廳이 3월부터 適用—

日本特許廳은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대하여 特許權으로서 成立되는 要件을 明白히 規定한 審査基準을 마련하여 施行중이다.

同基準은 特許成立의 對象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技術의 思考의 創作으로써 「소프트웨어의 目的인 特定結果를 얻기 위한 手段이 自然法則을 利用하고 있는 限」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로써의 惠澤을 받는 대상은 生産機械의 自動制御프로그램이나 化學플랜트의 制御프로그램 등 뿐이다. 例컨데 經營管理情報制度(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것은 目的달성을 위해 自然법칙 이외의 수단인 經濟原則을 이용하는 까닭에 특허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法的措處로 말미암아 重複投資를 피하고 效率의 情報化를 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流通을 促進할 展望이 크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專賣品과는 달리 얼마든지 複製가 가능하므로 盜用을 防止하는 뜻에서도 법적 보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1971년경부터 크게 擡頭되어 왔다.

1972년 5월에 있는 通商産業省 소프트웨어 法的保護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경우에 특허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 검토해 온 결과 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正式名稱은 「컴퓨터 프로그램 發明에 관한 審査基準」으로 適用範圍는 ① 프로그램에 한하며 ② 프로그램과 裝置 이외의 시스템



國際動向

(事務處理시스템 등) 따위의 組合 ③ 프로그램과 裝置 또는 裝置系(工作機械用 數値制御裝置·計算機·플랜트 등) 따위의 조합등에 한한다. 한편 이 심사기준은 實用新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特許適用範圍를 결정할 이상 다음에 어떤 내용의 것이 특허에서 말하는 발명으로 성립하느냐의 與否를 審査基準에서 볼 때 「적어도 기술적 사고의 창작이어야 하며 그 기술적 사고의 창작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제까지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둘러싸고 가장 論議가 많았던 부분으로서 日本 特許法에서는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고의 창작 가운데서 高度의 것이라 定義라고 있으나 이번 심사기준은 자연법칙의 이용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장기를 두어 나가는 프로그램은 장기라는 人爲的인 법칙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으나, 壓延機의 特性과 被壓延材料의 性質을 이용하여 所定の 形狀으로 압연하는 따위의 압연기 제어 프로그램의 경우라면 프로그램順이 자연법칙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先進工業國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를 마련한 나라는

아직 日本 뿐으로 이 점에 疎忽해 온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를 비롯한 歐美各國 간에 物議의 對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심사기준은 1976년 3월1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申請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立法化하고 있으며, 英國·西獨도 프랑스의 예를 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國에서는 大統領諮問委員會가 소프트웨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려는 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世界的 趨勢에도 不拘하고 唯獨 日本만이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 植物新品種에 特許權

—日 農林省主動으로—

日本の 新品種保護制度檢討會는 來年부터 實施될 植物新品種保護制度에 앞서 果實이나 花卉類의 개발된 새 품종에 特許權을 許與하는 規程草案 作成에 착수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① 登錄된 품종에 대해서는 獨占的인 排他權을 주어 育成者의 權利를 보호한다.

② 보호기간은 野菜나 꽃 등 非永年性作物은 15년 이상 과실이나 樹木 따위의 영년성작물은 18년 이상으로 하는 등 作物별로 정한다.

③ 他人이 權利를 侵害했을 경우는 假處分請求나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育苗者의 權利옹호에 主眼을 두고 있다.

日 農林省은 이 제도의 適用에 앞서 食물의 새 품종 보호에 관한 國際協約에 加盟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特許廳이 現行 特許法으로서 적용하려 하고 있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